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307
----------	-------

발의연월일 : 2026. 4. 14.

발 의 자 : 김기표 · 권철승 · 이연희
김태선 · 박상혁 · 박홍배
황명선 · 오세희 · 민홍철
김영배 · 이주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사립유치원에서 근무하던 교사가 B형 독감 판정과 39.8도의 고열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출근을 지속하다 끝내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였음. 해당 교사는 생명이 위중한 상황에서도 유치원 운영 공백을 우려해 적기에 휴식을 취하지 못하였는바, 유치원 교사의 열악한 근로 실태가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음.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업무 공백 시 대체인력을 배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유아교육법」에는 교직원이 휴가, 질병, 연수 등으로 인한 공백 발생 시 대체인력을 배치해야 할 명확한 법적 의무 규정이 미비함. 이로 인해 유치원 현장에서는 교직원이 신체상·정신상 질환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도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휴직이나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이는 교사의 생명권 침해는 물론 유아의 안전과 교육의 질 저

하로 직결되고 있음.

이에 유치원 설립자·경영자가 교직원의 휴가, 질병, 연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 공백이 발생할 경우 대체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및 통합대체인력지원시스템 구축 등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교직원의 휴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교육감이 유치원 현장의 대체인력 배치 및 근로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여 유치원 교사가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20조의2 신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 제목 중 “감독”을 “감독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교육감은 유치원 교직원의 휴가 사용 및 제20조의2에 따른 대체 인력 배치 현황 등 근로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장 또는 그 설립·경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하거나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할청에 이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제3항에 따른 실태점검의 주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대체인력의 배치 등) ① 유치원의 설립자·경영자는 교직원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를 대행할 인력(이하 “대체인력”이라 한다)을 배치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 및 해당 유치원의 정관이나 규칙에 따른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결혼, 사망, 출산휴가, 모성보호 휴가 등을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경우

2. 연수, 보수교육, 교육 현장 지원을 위한 파견 또는 출장 등에 공적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

3.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4.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는 경우

5. 본인 및 가족의 질병·사고,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관련 긴급지원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배치되는 대체인력은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대체인력의 원활한 배치를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연계된 통합 대체인력 지원시스템(이하 “통합대체인력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운영, 비용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대체인력의 자격, 배치 기준, 지원 범위 및 통합대체인력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여 그 업무를 대행할 인력 (이하 “대체인력”이라 한다)을 배치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 및 해당 유치원의 정관이나 규칙에 따른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결혼, 사망, 출산휴가, 모성보호 휴가 등을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경우

2. 연수, 보수교육, 교육 현장 지원을 위한 파견 또는 출장 등에 공적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

3.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4.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는 경우

5. 본인 및 가족의 질병·사고,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관련 긴급지원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배치되는 대체인력은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대체인력의 원활한 배치를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연계된 통합 대체인력 지원시스템(이하 “통합대체인력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운영, 비용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대체인력의 자격, 배치 기준, 지원 범위 및 통합 대체인력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